

|        |             |
|--------|-------------|
| 의안번호   | 2213395     |
| 의 퇴 인  | 박수영의원       |
| 회 답 일  | 2025.11.12. |
| 추 계 번호 | 25D5411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의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78만원, 2031년 508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604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기본적 신원사항 등록 및 공개<br>(안 제14조의18) | 50.8 | —    | 5.1  | 5.1  | 5.1  | 66.0 | 13.2 |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사업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다른 국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제14조의18(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 현행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호 <sup>1)</sup> 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을 재산등록사항과 함께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함 | 의무규정 |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
| 1  | 제14조의18(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의 기본적 신원사항 등록 및 공개에 필요한 공직윤리시스템 기능개선의 추가재정소요는 ‘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함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10.2.)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음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사업 예산 87백만원 중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인적사항 추가 기능 수행에 43백만원이 소요되었음
- 본 추계에서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의 기본적 신원사항 등록 및 공개 사업의 단가는 2021년 ‘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사업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sup>2)</sup>을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2) 소비자물가상승률(2025. 7. 경제전망 기준)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 | 2.0% | 2.0% | 2.0% | 2.0% | 2.0% | 2.0% |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직윤리시스템의 기능개선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로 구분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의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78만원, 2031년 508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604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시스템개발<br>(가족의 기본적 신원사항<br>등록·공개) | 50.8 | —    | —    | —    | —    | 50.8 | 10.2 |
| 시스템 유지보수                         | —    | —    | 5.1  | 5.1  | 5.1  | 15.2 | 3.0  |
| 합계                               | 50.8 | —    | 5.1  | 5.1  | 5.1  | 66.0 | 13.2 |

주: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 후 1년은 무상이며, 차차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요율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10%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사업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다른 국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임홍연 | 김안나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홍연 | 02-6788-4673 | limhy@na.go.kr |